

## 2026년도「대학연구소·스타트업 공동 혁신 R&D 지원」 사업 신규과제 공고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「2026년도 대학연구소·스타트업 공동 혁신 R&D 지원」 사업의 신규 과제 공모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1월 19일  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 
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김병국

### 1. 사업 목적

- 대학연구소와 스타트업의 초밀착 연계를 통한 혁신적 R&D 성과 창출, 스타트업 경쟁력 제고, 첨단 기술인재 양성 등을 위한 개방형 혁신 플랫폼\* 육성

\* 국가전략기술 중심 “개방형 공동 혁신 R&D 센터(OIRC: Open Innovation R&D Center)” 육성

### 2. 지원 근거

-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6조 및 제17조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5조,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및 제16조 등
- 「국정과제 28(세계를 선도할 넥스트(NEXT) 전략기술 육성)」, 「제8차 기술이전·사업화 촉진계획」('22.12월), 「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」('22.10월), 「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」('22.12월) 등

### 3. 지원 내용

#### □ 지원 기간 및 규모

- (당해연도 지원기간) '26. 4. 1. ~ '26. 12. 31. (9개월 내외)  
※ 총 사업기간 : '26. 4. 1. ~ '29. 12. 31. (총 45개월, 2+2년)
- (당해연도 지원규모) '26년 30억 원(2개 과제, 과제별 20억 원 x 9/12개월)

#### □ 중점 추진방향

- 전략기술분야 대학연구소를 혁신도전형 스타트업과의 협력 R&D 수행을 위한 개방형 혁신 거점으로 지정하고 스타트업을 입주시켜 공동R&D, 기술사업화, 인력양성 등 전략적 협력체계 마련
  - (공동R&D) 대학연구소-스타트업 간 초밀착 협력 활동(현장밀착형 R&D, 시설·장비 활용, 기술지도 등)을 수행하여 세계적 수준의 기술혁신 및 경쟁력 제고를 지원
  - (기술사업화) 대학연구소-스타트업 공동으로 핵심기술(대학연 보유/스타트업 수요) 발굴·고도화 → 검증·실증 → 기술이전 → 사업화 성과 창출 지원
  - (인력교류·양성) (대학연구소)연구 인력의 창업·사업화 역량 제고, (스타트업) 연구원의 최신 기술 역량 제고 지원

#### □ 사업신청 개요

- (지원대상) 대학연구소(주관) 및 혁신도전형 스타트업(공동) 컨소시엄
  - (주관기관) 대학 규정\*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\*\*을 통해 설립·운영 중인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대학연구소

\* 예)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설립·인증·운영 중인 대학부설연구소

\*\* 예) 대학중점연구소, 선도연구센터, 기초연구실 등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에 따라 설립·운영되어 정부R&D 사업 지원 유지 중인 대학연구소

- (공동기관)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에서 기술사업화를 추진 중인 스타트업

- ※ 연구책임자와 이해충돌기업(주식보유, 직계존비속 소유, 연구소 내 연구자 창업기업 등) 사전 배제 및 이해충돌 방지 서약서 제출 필수
- ※ **최소 3개 이상의 스타트업**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며, 과제 선정 이후에도 대학연구소 주관으로 매년 추가 선정 및 출업 가능

지원대상	구성 및 자격요건
대학 연구소 (주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<b>법적 요건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관련 법률(학술진흥법 제2조, 고등교육법 제25조, 기초연구법 등) 및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설립·운영 중인 대학연구소</li> <li>- 관련 법률(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)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지원사업을 통해 설립·운영 중이며 지원이 유지되고 있는 대학연구소</li> </ul> </li> <li>■ <b>자격요건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의 대학연구소</li> <li>- 대학 동일 캠퍼스 내 일정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대학연구소</li> <li>- 전담연구인력을 포함한 연구자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대학연구소</li> </ul> </li> </ul>
혁신도전형 스타트업 (공동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<b>법적 요건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</li> <li>- 중소기업창업법 제2조에 따른 설립 7년 이내, 제25조에 따른 딥테크 분야 설립 10년 이내 기업</li> </ul> </li> <li>■ <b>자격요건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학연구소 내 입주(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)가 가능한 스타트업</li> <li>-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해당되는 스타트업</li> <li>- 국가전략기술 분야 내 구체적인 산학협력 수요가 있는 스타트업</li> </ul> </li> </ul>

- (연구책임자) 과제 운영 및 기관 간 협력 권한·역량을 보유한 자로서, 과제별(주관, 공동기관별) 1인 연구책임자 지정

※ 단,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

- (신청방법) 주관기관 중심 사업계획서 및 증빙 제출

- (사업계획서) 사업추진 방향, 개방형 공동 혁신 R&D센터 구성 및 운영계획, 스타트업 공동연구 및 협력 방안, 혁신연구성과의 기술 사업화 추진 방안 등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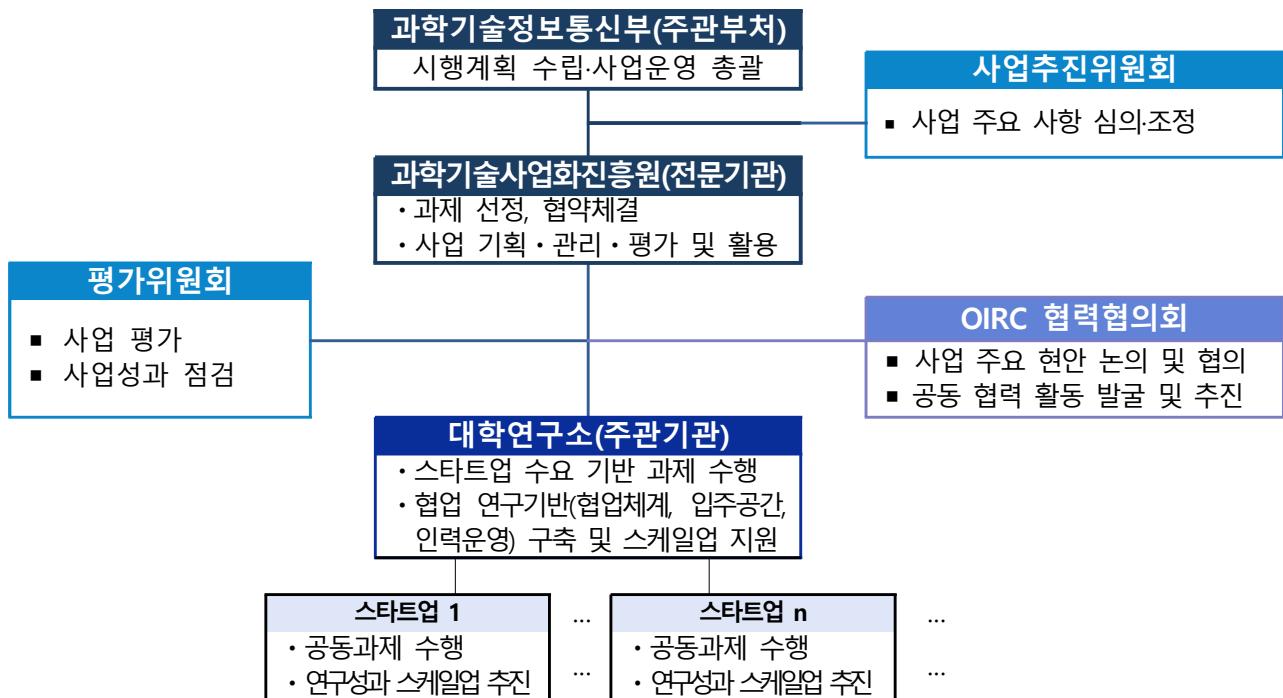
※ 연구비를 통한 스타트업 입주 공간확보 필요시 사전 계획 및 제출 필수, 심의 결과에 따라 활용 가능 비율 및 매칭비율 등 변동 가능

- (증빙자료) 주관기관 중심 '대학연구소-스타트업 자격·역량 검토 자료' 및 세부 증빙 작성·첨부·제출(붙임양식)

## 4. 추진 체계

### □ 추진 체계 및 역할

- (추진 체계)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주관부처),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(전문기관), 대학연구소(주관기관) 및 스타트업(공동기관)



- (수행 주체별 역할)

구분	주요 역할 및 기능	비고
주관연구기관 (대학연구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혁신도전형 스타트업 수요 기반 공동과제 수행</li> <li>■ 혁신도전형 스타트업 수요 기반 비R&amp;D 지원(대학) (기술지도/자문, 공동연구장비 활용 지원, 인력 지원 등)</li> <li>■ 혁신도전형 스타트업 입주 공간 등 지원(대학)</li> </ul>	공동연구 및 스타트업 지원
공동연구기관 (혁신도전형 스타트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공동과제 수행</li> <li>■ 공공기술사업화 추진</li> <li>■ 스케일업 컨설팅 참여</li> </ul>	공동연구
컨설팅 전담조직 (용역/위탁/자체수행 등 센터별 자율 구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대학연구소-혁신도전형 스타트업 연계 IP 창출 전략 수립</li> <li>■ 혁신도전형 스타트업 성장전략 컨설팅</li> <li>■ 공공기술사업화 전략 수립</li> <li>■ 스케일업 지원(후속 투자 유치 등)</li> </ul>	스케일업 컨설팅
협력협의회 (전문기관 - 전체 OIRC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업 주요 현안 논의 및 협의</li> <li>■ 공동 협력 활동 발굴 및 추진 방안 협의 등</li> </ul>	공동

## 5. 평가 절차 및 기준

### □ 평가 절차

- (선정절차) 사전검토(전문기관) → 서면평가(1차) → 대면평가(2차) → 사업추진위원회(심의·확정) 3단계 절차 진행
  - (1단계 서면평가) 사업계획서 및 자격 증빙에 대한 서류검토  
※ 최종선정 과제수의 2배수 내외로 발표평가 대상 선정(다만, 경쟁률 3배수 미만일 경우 서면평가 생략 후 대면평가 실시 검토 가능)
  - (2단계 대면평가) 연구책임자 연구계획 발표 및 질의·응답 등
  - (3단계 최종선정) 평가결과 최종심의 및 확정 등  
※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 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,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 대상 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

### □ 평가 기준

- 신청과제 대상 지원 필요성(20), 연구계획의 우수성(20), 사업추진 역량 우수성<sup>\*</sup>(30), 실질적 협력 계획의 적절성·우수성(30) 등 종합 검토  
\* 「국가전략기술육성법」 제9조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점이 확인된 기업이 참여하는 대학연구소의 경우, 사업 선정 시 우대 가능

평가항목	평가내용	배점
지원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■ 국가전략기술분야와의 부합성 및 기술개발 시급성</li><li>■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연구소 우수 연구성과의 실용화 지원 필요성 및 스타트업 기술혁신 가능성</li></ul>	20
연구계획의 우수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■ 컨소시엄 구성(구성계획)의 우수성</li><li>■ 응용분야별 연구개발계획의 적절성</li><li>■ 기술실용화 계획의 구체성(응용분야별)</li><li>■ 기술 실용화 시 예상 파급효과의 우수성</li><li>■ 외부 환경변화 대응 및 주요정책 방향 부합성 (정부투자 집중분야 등)</li></ul>	20
사업추진 역량 우수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■ 주관기관의 연구개발·지원 역량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기관 참여 의지*, 인력구성 적절성, 인프라 우수성 * 예) 연구책임자 책임시수 감면, 협업 공간 지원 확약 등</li><li>■ 연구책임자의 우수성(연구역량 등)</li><li>■ 스타트업들의 전략기술분야 추진역량</li><li>■ 연구소의 학석박사 인력양성 및 교류 활성화 정도</li></ul></li></ul>	30
실질적 협력 계획·역량의 적절성·우수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■ 대학연구소-스타트업 간 협력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</li><li>■ 공동연구개발 수행체계의 적절성</li><li>■ 초밀착 협업 환경 구성의 적절성(공간확보/입주계획 등)</li><li>■ 상호 지원(인력, 장비, 시설 등) 활용계획의 타당성</li></ul>	30
	합계	100

※ 상기 지표는 평가계획 수립 시 변동될 수 있음

## 6. 사업 추진일정

절차	추진내용	일시	주체
사업공고	'26년 대학연구소-스타트업 공동혁신 R&D 사업공고	'26.1월	과기정통부
▼ 신청서 접수 및 검토	사업계획서 접수	'26.2월	과학기술사업화 진흥원
▼ 선정평가	서면 및 발표평가	'26.3월	과학기술사업화 진흥원
▼ 최종선정	사업추진 위원회 검토·의결	'26.3월	과기정통부
▼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	최종선정 기관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	'26.4월	과학기술사업화 진흥원
▼ 사업수행	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수행	'26.4월~ 12월	주관기관
▼ 중간점검	수행과제 대상 사업 추진현황 점검	연중	과학기술사업화 진흥원
▼ 연차점검	1차년도 추진 결과 및 2차년도 추진계획 점검	'26.12월	과학기술사업화 진흥원
▼ 2차년도 연구비지급	2차년도 사업비 지급	'27.1월	과학기술사업화 진흥원

※ 상기 사업추진 일정, 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음

## 7. 신청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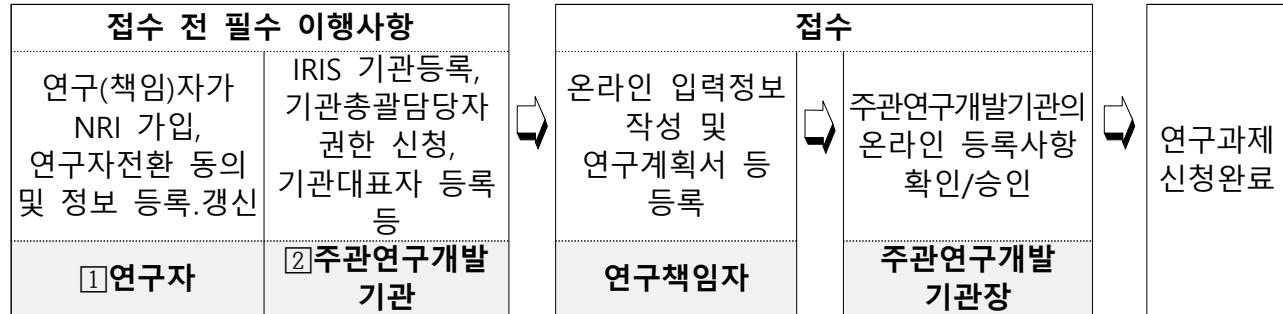
### □ 신청기간

구분	내용
공고기간(40일)	2025.1.19.(월) ~ 2.27.(금)
연구책임자 신청기간(17일)	2025.2.11.(수) 10:00 ~ 2.27.(금) 16:00
주관연구기관 검토·승인 기간(17일)	2025.2.11.(수) 10:00 ~ 2.27.(금) 16:00

※ 연구책임자는 신청 마감일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 진행 필수, 주관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뒤 신청접수 최종 완료됨

## □ 신청절차

-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<https://www.iris.go.kr>)에  
입력정보 작성, 연구계획서 등 등록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必



▶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을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(연구자) ① IRIS 회원가입, ② IRIS 내 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, ③ NRI 내 학력/경력\*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\*\* 정보 등록 필수

\* 경력정보에서 근무(소속)부서 등록 필수

\*\*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, 수행 중/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

※ ① 및 ②: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(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)  
③: 연구책임자 필수

② (주관연구개발기관) 검토·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·승인을 완료하여야 함

※ 기관대표자 및 기관(총괄)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 전환 동의 필수

▶ IRIS 문의처 : IRIS 쿨센터 1877-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

▶ IRIS 사업신청 시뮬레이션 : IRIS접속 > 알림·고객 > 자료실 > IRIS사용매뉴얼 > 시뮬레이션(연습하기)

## □ 신청관련 주의사항

- (연구책임자)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온라인 입력사항, 관련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고 최종확인 및 제출 버튼 클릭

※ 마감 시간의 신청 폭주를 감안하여 사전에 신청 절차 완료 필수

- (주관연구개발기관)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은 소속기관 담당자가 처리하며,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

※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승인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

- (기타) 마감 시간 이후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이 자동 차단되어 신청 불가

※ 접수 마감 시간 전까지 반드시 접수가 완료([제출]버튼 클릭)되어야 함

## □ 제출서류 목록

- (연구개발계획서 전산입력) 기본정보, 과제 요약문, 연구기관 및 연구원 정보, 연구비 내역, 주요 연구실적 등 정보입력

- (온라인 자료 업로드) 연구개발계획서(한글) 등 제출자료는 첨부 양식 참조

※ 제출 서류 누락에 따른 불이익은 주관연구기관(책임자)에게 있음

No	제출서류	제출대상			제출방법	
		주관	공동	위탁	제출부수	제출양식
1	[필수] 연구개발계획서(PART2_본문1) <sup>1)</sup>	◎	-	-	hwp, pdf 각 1부	표준양식
2	[필수] 대학연구소-스타트업 자격역량 검토서	◎	◎	-	1부	붙임양식
3	[필수] 이해충돌방지서약서	◎	-	-	1부	붙임양식
4	[필수] 제재정보 확인서(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)	◎	◎	◎	각 1부	NTIS다운*
5	[필수] 연구데이터 관리계획(DMP)	◎	◎	-	1부	표준양식
6	[필수] 기관참여 협약서	◎	◎	◎	1부	표준양식
7	[필수]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◎	◎	◎	1부	표준양식
8	[필수] 개인정보·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등	◎	◎	◎	1부	표준양식
9	[해당 사] 귀금속 재료 구입 및 사용계획	◎	◎	◎	1부	표준양식

\* NTIS사이트([www.ntis.go.kr](http://www.ntis.go.kr)) 로그인 > "MY제재조회" >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대상확인서 발급

1) 작성 분량은 핵심 내용 위주로 55P 이내로 작성, 기타 증빙자료는 별첨 활용(별첨은 작성 분량 미포함)

## 8. 유의사항

### □ 신청 유의사항

- (참여제한) 접수마감일 기준, 교육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거나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제한을 받는 수행기관(대표자) 또는 연구 책임자\*는 지원 제외
  - ※ 사업을 신청하는 모든 기관(주관 및 공동, 위탁기관) 및 해당 기관의 연구책임자의 제재 현황을 NTIS 사이트에서 조회하여 확인서 제출
  - ※ NTIS 사이트([www.ntis.go.kr](http://www.ntis.go.kr)) 로그인 > "MY제재조회" >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대상확인서 발급
- (3책 5공 제외) 본 사업은 3책 5공의 적용 제외 대상 사업
- (특수관계자) 특수관계자(배우자, 직계존·비속 등)가 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
- (허위 제출) 사업신청 시,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, 거짓인 경우 지원 제외
- (서류 미비) 접수기간 내, 연구개발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제출이 미비한 경우 지원 제외
- (조정 가능) 평가위원회 의견 등\*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, 과제 구성, 연구비, 연구기간 등 변동 가능
  - \* 예산 상황, 시행계획에 따라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변경될 수 있으며, 단계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 증감, 지원 중단, 조기종료 등도 가능
- (재공고) 접수 완료 후 요건 탈락 및 포기로 인한 지원과제 수 미달 등 필요시 재공고 가능
- (관련 법령)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\*에 의함
  - \* 「과학기술기본법」,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연구개발 혁신법」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, 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」 등

## □ 평가 기타 사항

- (차별성 검토) 전문기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 시스템 및 전문가 검토로 신청과제에 대한 차별성을 검토함
  -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차별성이 없는 과제로 판명될 시 선정 제외
- ※ (검토 기준) ①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 및 ②연구개발주제·목표·수행방식의 차이점(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12조 제3항)
- (동점자 처리) 동점 발생 시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고득점 순<sup>\*</sup>으로 선정
- ※ (점수 산출) 평가위원 평가점수 합계의 산술평균(최고점, 최저점 제외, 소수점 2자리 반올림 점수)을 통해 평가점수 산정
- \* 평가항목별 득점까지 동일한 경우, 우선순위는 "실질적 협력 계획·역량의 적절성·우수성 → 사업추진 역량 우수성 → 연구계획의 우수성→ 지원 필요성" 순으로 함
- (이의신청)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
- ※ (인정 범위) 통보된 평가결과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받으며, 평가위원,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

## □ 기술료 납부에 관한 사항

- 연구개발성과를 실시(사용·양도·대여·수출 등)하려는 연구기관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(기술료) 납부 필수
- ※ 기술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18조, 동법 시행령 제38조, 제39조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름

## □ 생명연구자원(소재+데이터) 기탁·등록 의무 이행 안내

- 본 과제로 산출되는 생명자원(생물자원 및 생명정보)은 「생명연구자원의 확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33조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·등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
- ※ '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'(20.5)에 따라 전문기관은 과제 점검 및 평가 시, 등록 현황을 관리할 수 있음

## □ 연구개발비 편성 안내

구분	안내사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개발비 편성안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[별표2]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참고하여 연구비 산정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연구개발비는 주관, 공동 등 기관 구분하여 계상 및 관리</li> </ul> </li> <li>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에 따라 산정하되,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, 제출서류 1.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및 작성 요령의 &lt;참고, 연구개발비 편성가이드&gt;를 활용해야 함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개발비 자율성부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예산집행 자율권 부여 : 정부가 대학연구소에 전체 사업비 지급, 대학연구소는 대학 규정 및 연구소 내 예산 활용 배분계획에 따라 연구비 지원·관리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연구비 사용관리·책임 권한은 주관기관 연구책임자(대학연구소장 등)에게 부여</li> </ul> </li> <li>주관연구개발기관은 <b>당해 예산의 50% 이상을 스타트업과의 공동 R&amp;D 수행에 활용하고, 잔여 예산은 개방형 공동 혁신 R&amp;D 센터 구축·운영 및 연구소 자체 R&amp;D에 활용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활동비에 협력협의회 운영 예산(1천만원) 포함 필수</li> </ul> </li> <li>공동 R&amp;D 예산의 50% 이상은 혁신도전형 스타트업에 배분          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 정부출연금 배분 예시(1,500백만원 기준) 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단위: 백만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대학연구소 활용(50%)</th> <th colspan="2">혁신도전형 공동 R&amp;D(50%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6" style="vertical-align: middle; text-align: center;">750</td> <td rowspan="2">세부과제1</td> <td>연구소</td> <td>150</td> </tr> <tr> <td>공동기관1</td> <td>15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세부과제2</td> <td>연구소</td> <td>100</td> </tr> <tr> <td>공동기관2</td> <td>15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세부과제3</td> <td>연구소</td> <td>100</td> </tr> <tr> <td>공동기관3</td> <td>100</td> </tr> <tr> <td><b>합계</b> (750백만원)</td> <td><b>연구소</b></td> <td><b>350</b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b>기업</b></td> <td><b>400</b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right;">(공동 R&amp;D 예산의 50% 이상)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/li> </ul>			대학연구소 활용(50%)		혁신도전형 공동 R&D(50%)		750	세부과제1	연구소	150	공동기관1	150	세부과제2	연구소	100	공동기관2	150	세부과제3	연구소	100	공동기관3	100	<b>합계</b> (750백만원)	<b>연구소</b>	<b>350</b>		<b>기업</b>	<b>400</b>		(공동 R&D 예산의 50% 이상)	
대학연구소 활용(50%)		혁신도전형 공동 R&D(50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50	세부과제1	연구소	15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공동기관1	15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세부과제2	연구소	1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공동기관2	15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세부과제3	연구소	1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공동기관3	1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합계</b> (750백만원)	<b>연구소</b>	<b>35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b>기업</b>	<b>40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(공동 R&D 예산의 50% 이상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스타트업의 기관부담금 산정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(기관부담금 매칭)</b> 정부출연금의 25% 이상, 이중 현금은 부담금의 10% 이상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부담 기준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민간부담금 비율</td> <td>정부 출연금의 25% 이상</td> <td>· 전담인력의 인건비, 기자재 등으로 매칭 가능</td> </tr> <tr> <td>현금 비율</td> <td>민간부담금의 10% 이상</td> <td>· 매칭 현금은 전액 사업 전담조직이 활용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[별표 1]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 참조</p>			구분	부담 기준	비고	민간부담금 비율	정부 출연금의 25% 이상	· 전담인력의 인건비, 기자재 등으로 매칭 가능	현금 비율	민간부담금의 10% 이상	· 매칭 현금은 전액 사업 전담조직이 활용																				
구분	부담 기준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민간부담금 비율	정부 출연금의 25% 이상	· 전담인력의 인건비, 기자재 등으로 매칭 가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현금 비율	민간부담금의 10% 이상	· 매칭 현금은 전액 사업 전담조직이 활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장비 도입 시 예산심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'기술실용화/사업화'</b> 지원을 위한 연구장비(3천만원 이상)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,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'연구장비예산 심의요청서'를 작성·첨부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구축하고자 하는 장비가 3천만원~1억원 미만인 경우는 과제평가단 심의, 1억원 이상인 경우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(과기부)에서 심의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※ 평가위원회를 통해 연구개발비 산정은 조정될 수 있음

## □ 문의처

구분	담당부서	이름	전화번호	이메일
사업 문의	사업화실	김혜인 연구원	02-736-9206	khi0630@compa.re.kr

## □ 사업내용

- (목적) 대학연구소를 스타트업과 협력하여 혁신적 R&D성과 창출, 스타트업 경쟁력 제고, 첨단기술인재 양성 등을 위한 개방형 혁신 플랫폼으로 육성

### [참고] 대학연구소 정의

- 학과나 학부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학제 간 그룹-융합연구를 몰입도 높게 수행 할 수 있고, 전문인력·장비·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소·연구센터

※ (예시) 대학의 규정에 따라 설립·운영 중인 대학부설연구소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에 따라 설립·운영되어 정부R&D 사업 지원 유지 중인 대학중점연구소, 선도연구센터, 기초연구실 등

- (수행주체) 대학연구소\*, 혁신도전형 스타트업\*\* 등

\* 국가전략기술분야 혁신역량(연구성과, 연구시설·인력·공간 등)을 보유한 대학연구소

\*\* 딥테크·딥사이언스 기술 기반 스타트업

※ TLO 참여 가능(전략적 사업화 방향 컨설팅 등)

- (지원내용) 국가전략기술분야 대학연을 스타트업과의 개방형 혁신 플랫폼으로 지정하고 스타트업을 입주시켜 기술혁신, 기술사업화, 인력양성 등을 지원

- (사업단계별 운영(안))

- (1단계('26~'27년)) 대학연구소 중심의 개방형 공동혁신 R&D센터 구축·운영 및 혁신도전형 스타트업 수요기반 공동 R&D 수행

※ 연구인프라 및 활용 플랫폼 구축, 대학연구소 자체 R&D 수행, 스타트업과 공동 R&D 기획·수행을 통한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 등

- (2단계('28~'29년)) 대학연구소 연구성과 기반 경제적 성과 창출 및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

※ 공공기술 사업화 추진, 스타트업 시장진입 성공, 성과확산 활동 및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

- 「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및 동 시행령, 과기정통부 고시 제2024-6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분야 유관분야

국가전략기술		기술 개요
분야	중점기술	
<1> 반도체· 디스 플레이	① 고집적·저항기반 메모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용량, 고속·고대역폭, 저전력 특성을 가지며 기존 대비 더 이터 유지/읽기/쓰기 특성이 향상된 차세대 메모리반도체의 소자·소자·공정 기술</li> </ul>
	② 고성능·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학습추론 등 인공지능 구현에 필요한 수십~수천 TFLOPS급 연산을 저전력·고효율로 실행하는 설계소자 및 반도체 운영 SW 기술</li> </ul>
	③ 반도체 첨단패키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반도체 모듈의 고성능화·고집적화·고에너지효율을 경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하이퍼스케일·고밀도·다차원·이종집적·칩렛·패키지 기술</li> </ul>
	④ 전력반도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탄화규소, 질화갈륨, 산화갈륨 등 화합물 기반으로 고효율 전력 변환·안정·분배·제어에 사용되는 반도체 및 부품 기술</li> </ul>
	⑤ 차세대 고성능 센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스마트기기, 첨단모빌리티, 극한환경 등에 특화되어 물리센서를 기반으로 지능형 인자·감지 기술을 융합, 물리·화학·바이오 정보를 감지·변환하는 장치·부품 기술</li> </ul>
	⑥ 무기발광 디스플레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휘도·장수명이 가능한 무기소재 기반의 자발광 디스플레이 기술</li> </ul>
	⑦ 프리폼 디스플레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존 경성(Rigid) 디스플레이 대비 휘거나, 접거나, 늘릴 수 있는 유연·신축 디스플레이 기술</li> </ul>
	⑧ 반도체·디스플레이 소재·부품·장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초미세 반도체 소자·시스템 집적화(노광, 식각, 증착·공정)를 수행할 수 있는 첨단 소재·부품·장비 기술</li> <li>고효율·고신뢰성·친환경 OLED 소재·부품 및 대면적·초소형 OLED용 제조장비 기술</li> </ul>
<2> 이차전지	⑨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쟁력·현·리튬이온전지의 에너지밀도 극대화(350Wh/kg급) 및 가격·공정·친환경화 확보를 위한 리튬이온전지 소재 및 공정 기술</li> </ul>
	⑩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·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반전고체, 리튬금속, 리튬황(이상 400Wh/kg 목표) 및 나트륨이온전지(220Wh/kg 목표) 등 기존 리튬이온전지의 기술적·산업적 한계를 능가하여 고에너지밀도, 고안전성, 가격경쟁력 등 응용분야별 맞춤형 특성 확보가 가능한 차세대 소재·전지제조 기술</li> </ul>
	⑪ 이차전지 모듈·시스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기 모빌리티 및 에너지저장장치(ESS)의 성능·안전도·수명 향상 위한 모듈·팩·시스템 기술 및 지능형 관리 기술</li> </ul>
	⑫ 이차전지 재사용·재활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용후 배터리의 고안전·고효율 재사용 및 고순도·친환경 자원 회수·재활용 관련 기술</li> </ul>

분야	국가전략기술	기술 개요
	중점기술	
<3> 첨단 모빌리티	⑬ 자율주행 시스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람의 조작 없이 차량을 운행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및 통신·서비스·컴퓨팅 기술과 성능안전·인증 기술</li> </ul>
	⑭ 도심항공교통(UAM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저소음·친환경·동력 기반의 수직이착륙 교통수단 및 도심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체계(교통관리, 이·착륙 인프라, 성능안전·인증) 기술</li> </ul>
	⑮ 전기·수소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전압 배터리, 수소 연료전지 또는 탄소중립연료 에너지를 동력 시스템으로 공급하여 구동되는 친환경 자동차 기술</li> </ul>
<4> 차세대 원자력	⑯ 소형 모듈형원자로[SMR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안전(무한냉각, 사고저항핵연료), 소형 모듈화 제조(노심부품, 소재, 혁신 제조), 유연성 운전 등의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경수형 소형원자로 기술</li> </ul>
	⑰ 선진원자력시스템 및 폐기물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액체금속, 기체, 용융염 등을 냉각재로 활용하고 장주기 노심·높은 출구 온도 특성을 갖춘 다목적 비경수형 원자로 및 사용후 핵연료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(운반·저장·부자처분) 기술</li> </ul>
<5> 첨단 바이오	⑱ 합성생물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생명과학에 공학적 관점을 도입하여 인공적으로 생명체 구성요소·시스템을 설계·제작·합성하는 기술</li> </ul>
	⑲ 유전자·세포 치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유전자 결함보완·기능추가 관련 유전자치료제 또는 세포·조직 기능복원 관련 세포치료제의 개발·제조 관련 기술</li> </ul>
	⑳ 감염병 백신·치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변증 및 미해결 감염병 발생 시 관련 백신치료제를 신속하게 개발·제조할 수 있는 전달물질 및 후보물질 발굴 등의 기반 기술</li> </ul>
	㉑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·활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바이오·의료 데이터를 수집·생성·통합·분석하고 개인맞춤형 진단·치료·예방·건강관리 및 데이터 기반 신약 개발에 활용하는 기술</li> </ul>
<6> 우주항공 ·해양	㉒ 대형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우주발사체의 재점화 및 추력조절이 가능한 고추력·고효율 엔진 설계·제조·평가·인증 기술</li> </ul>
	㉓ 우주 관측·센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우주 관측을 위한 인공위성 본체·인공위성 탑재체(관측·통신·항법) 고도화 기술 및 위성 획득정보와 우주자산 활용을 위한 운영·관리 체계 기술</li> </ul>
	㉔ 달착륙·표면탐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달착륙선·무인이동체·우주선 설계·제작, 행성간 임무 궤도설계·운영을 위한 행성 연착륙·표면 임무 및 심우주탐사 기반기술</li> </ul>
	㉕ 첨단 항공가스터빈 엔진·부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추력 15,000lbf 이상 고출력·장수명 유무인용 터보팬 가스터빈 엔진 설계·제조·평가·인증 기술</li> </ul>
<7> 수소	㉖ 해양자원 탐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극지·대양의 심해에 있는 해양 전략광물(희토류, 코발트, 니켈, 망간, 흑연 등) 탐사·채굴 기술</li> </ul>
	㉗ 수전해 수소생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기를 이용해 물(H<sub>2</sub>O)을 분해하여 연료·전력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수소를 생산(환원 반응)하는 기술</li> </ul>
	㉘ 수소 저장·운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생산된 수소를 기체 상태로 저장·운송하거나, 극저온 액화(-253°C)하여 저장·공급하는 기술</li> </ul>
	㉙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수소 기반 연료를 전기·열로 직접 전환하거나, 가스터빈에 연소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기술</li> </ul>

분야	국가전략기술	기술 개요
	중점기술	
<8> 사이버 보안	⑩ 데이터·AI 보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개인·기업의 중요데이터(개인정보, 산업정보)의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AI 적용 지능형 보안 기술</li> </ul>
	⑪ 디지털 취약점 분석·대응(공급망 보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디지털 공급망 전주기를 대상으로 한 보안무결성 검증 및 사이버침해행위 대응을 위한 원점탐지·추적·복구·예방기술</li> </ul>
	⑫ 네트워크·클라우드 보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클라우드 환경의 제로트러스트 구현 및 보안관제 지능화·차세대 통신을 위한 신뢰성·안정성을 보장하는 보안 기술</li> </ul>
	⑬ 산업·가상융합 보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보보안·물리보안을 가상융합 환경 및 산업분야 특성에 따라 융합·적용하는 보안 기술</li> </ul>
<9> 인공지능	⑭ 효율적 학습 및 AI인프라(SW/HW) 고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인공지능 모델 생성·활용 과정에서 활용 데이터 규모, 소모전력 등 학습 효율성을 대폭 제고할 수 있는 최적화·경량화 관련 기술</li> </ul>
	⑮ 첨단 AI 모델링·의사결정(인지·판단·추론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인공지능이 사람의 사고체계를 모델링하여, 맥락의 종합적 이해를 통한 종합적 인지·성장, 상식 수준의 추론 및 상호간 소통·협력·창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</li> </ul>
	⑯ 산업 활용·혁신 AI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업의 손쉬운 AI 활용을 위해 코딩을 최소화한 AI 기술 및 AI 적용을 통해 산업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기술</li> </ul>
<10> 차세대 통신	⑰ 안전·신뢰 AI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AI 모델이 보편적 규범가치 및 개인정보, 저작권 보호 등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, 외부로부터 강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술 및 결론·도출과정 등에 대한 설명가능성을 제고하는 기술</li> </ul>
	⑱ 5G 고도화(5G-Adv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5G 최초(3GPP Rel-15) 표준 및 융합서비스(3GPP Rel-17) 표준 이후 제정되는 5G-Advanced (3GPP Rel-18 이후) 표준을 지원하는 이동통신 기술</li> </ul>
	⑲ 6G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5G 이후 다음 세대(ITU IMT-2030 표준, 3GPP Rel-21 이후)의 통신 인프라 기술</li> </ul>
	⑳ 오픈랜(Open-RAN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무선장치(RU), 분산장치(DU), 중앙장치(CU) 등의 블록(HW/SW)간 프로토콜 및 인터페이스를 개방하는 기술</li> </ul>
	㉑ 고효율 5G·6G 통신부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5G·6G 이동통신 장비 및 기기에 탑재되는 무선통신용 부품과 광통신용 부품 기술</li> </ul>
	㉒ 5G·6G 위성통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상과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지상, 해상, 공중 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3차원 공간 통신 기술</li> </ul>

분야	국가전략기술	기술 개요
	중점기술	
<11> 첨단로봇· 제조	④③ 로봇 정밀제어구동 부품SW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로봇 주변환경 및 사용자의 인지적·신체적 의도를 인식하고 움직임을 제어·구동하는 로봇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코어 부품 기술</li> </ul>
	④④ 로봇 자율이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로봇이 비정형 실내/외 환경에서 인간의 구체적 지시 없이도 목표하는 위치로 자율적으로 이동하는 기술</li> </ul>
	④⑤ 고난도 자율조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유연관절·초경량 팔과 손을 이용해 로봇의 자율적인 상황 인지·판단을 바탕으로 안전한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</li> </ul>
	④⑥ 인간-로봇 상호작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로봇과 사람 간 상호작용·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상황에 대한 복합적 이해를 기반으로 행동·표현·대화 등을 자율적으로 고속 생성하는 기술</li> </ul>
	④⑦ 가상 제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스마트팩토리를 가상 공간(디지털 트윈)에 이식하여 사·공간의 제약을 탈피한 제조·생산·공정 지능화 혁신 기술</li> </ul>
<12> 양자	④⑧ 양자컴퓨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양자역학적 특성(양자얽힘 등)을 이용하여 기하급수적 성능 향상이 가능한 병렬연산 관련 HW/SW 기술</li> </ul>
	④⑨ 양자통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양자상태로 구현된 정보단위를 송수신하여 정보탈취가 불가능한 특징을 가지는 통신 기술</li> </ul>
	④⑩ 양자센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전센싱 대비 더 민감한 특정 물리량(전·자기장, 빛·중력 등)의 초정밀 측정을 위해 필요한 양자시스템 또는 양자현상을 활용한 초고성능 센서 기술</li> </ul>
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5조 제4항 및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[별표1]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인 창업기업인 경우 업력 10년까지의 기업도 신청 가능

[참고] 신산업 창업 분야

- 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 : 「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」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-2호) [별표1]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 
→ 신산업 창업 분야 여부는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, 최종선정 과정 등에서 검토하며, 해당 분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 될 수 있음

< 27개 신산업 창업 분야 >

인공지능	스마트 제조	드론·개인이동수단
빅데이터	시스템반도체	미래형 선박
5G+	자율주행차	재난/안전
블록체인	전기수소차	스마트시티
서비스플랫폼	바이오	스마트홈
실감형콘텐츠	의료기기	신재생에너지
지능형 로봇	기능성 식품	이차전지
CCUS(탄소포집·활용·저장)	우주	양자
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	차세대 원전	사이버 보안